

# 의 안 발 의 서

의 번	안 호	2010 -
--------	--------	--------

수 신 : 거창군의회 의장

2010. 07. .

제 목 : 규칙안 제출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 
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.

붙 임 :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제안자 : 거창군의회운영위원장 이 성 복 (인)

의안번호	제 2010 - 호
의결연월일	2010. 07. . (제 168 회)

의결사항

##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 이성복
제안연월일	2010. 07. 12.

#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2010-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 2010년 7월 12일

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이성복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,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직렬과 직급을 개정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제1항의 별표, 전문위원별 직급 중 의회운영위원회·특별위원회의 직렬, 직급을 개정하고자 함.

○ 행정 ⇒ 행정·세무(안 제3조관련 별표)

○ 지방행정주사 ⇒ 지방행정주사·지방세무주사(안 제3조관련 별표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」 「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라. 기타: 해당없음

거창군 규칙 제 호

##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의 별표 중 의회운영위원회·특별위원회의 직렬란 중 “행정□□을  
“행정·세무□□로 하며, 직급란 중□□지방행정주사□□를□□지방행정주사·  
지방세무주사□□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<b>【별표】</b> 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				<b>【별표】</b> 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			
위원회명	직 위	직 렬	직 급	위원회명	직 위	직 렬	직 급
총무위원회	전문위원	행정	지방행정 사무관	총무위원회	전문위원	행정	지방행정 사무관
산업건설 위원회	전문위원	행정·농 업·시설	지방행정· 농업·시설 사무관	산업건설 위원회	전문위원	행정·농 업·시설	지방행정· 농업·시설 사무관
의회운영위 원회·특별 위원회	전문위원	<u>행정</u>	<u>지방행정 주사</u>	의회운영 위원회· 특별위원회	전문위원	<u>행정· 세무</u>	<u>지방행정 주사· 지방세무주사</u>

# 관 계 법 령

## ◆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[시행 2010. 7. 1] [대통령령 제22243호, 2010. 6.30, 일부개정]

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·도의 의회사무처,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, 의회사무국장·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시·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(定數)는 별표 5와 같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·의회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④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◆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

제 4조 (직급별 정원) (신설 2008.12.31)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(신설 2008.12.31[시행 2010. 3.19] [법률 제 9932호, 2010. 1.18, 타법개정])

## ◆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

제 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에 따라 “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”과 “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8.2.14.)(개정 2008.12.31)

제 2조 (직급·직렬별 정원) (개정 2008.12.31)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(개정 2007.1.2, 2008.11.3, 2008.12.31)

◆ 「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」

제 3조 (전문위원) ① 소속위원회의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[별표] 와 같다.(개정 2002.10.29)

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08.9.23>

1. 조례안, 예산안,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<개정 2008.9.23>
2.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및 관련 의원에 대한 제공
3.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
4. 의사진행 보좌
5. 군의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운영
6. 그 밖의 의안 검토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<개정 2008.9.23>제 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별표]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

위원회명	직 위	직 렬	직 급
총무위원회	전문위원	행 정	지방행정사무관
산업건설위원회	전문위원	행정·농업·시설	지방행정·농업·시설사무관
의회운영위원회· 특별위원회	전문위원	행 정	지방행정주사